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72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휘 · 강승규
박성민 · 최수진 · 김선교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에 따른 입지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
4.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5.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
6.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3(수도권 외 지역의 국</u> <u>내복귀기업 지원 특례) ① 국</u> <u>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u> <u>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u> <u>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u> <u>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u> <u>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u> <u>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u> <u>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u> <u>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u> <u>2. 제13조에 따른 입지지원</u> <u>3.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u> <u>4.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u> <u>5.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u> <u>개선 지원</u> <u>6.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u> <u>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u> <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u> <u>원</u> <p><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u></p>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